

## [사 건 명] 행심 2019 - 3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교내봉사 3일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교내봉사 3일 등』 처분을 취소한다.

### [재결이유]

####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학교 학생으로 같은 학교 1학년 학생인 ○○○에 대한 학교 폭력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2018. 11. 1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청구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 ‘교내봉사 3일,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 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8. 11. 21.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9. 1. 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실설명과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위압감을 주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에게 사과를 하려고 하였으나, 학교폭력전담교사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여 사과하지 못하였던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그 절차상에 위법이 있다.

나. 청구인은 ○○○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였지만, 돈을 빌려달라는 문자내용의 취지와 그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에게 강요나 위협을 가한 것이 아닌 만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은 ○○○에게 “디케바지 사라”고 말을 하였고, ○○○도 “알아보고 있어요”라고 말을 하였으며, 청구인도 “알았어”라고 말을 한 것이 전부이고 (보충서면에서 sns에서 물건을 사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함), 그 과정에서 강압적이거나 문제가 된 태도나 행동을 보인 적이 없는 만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같은 학교 3학년 ●●● 학생으로부터 돈을 모아달라는 강요를 당하여 위 ●●● 학생의 폭행과 보복이 두려워 부득이하게 ○○○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던 것인 만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그 경위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3학년인 ●●● 학생보다 더 많은 처분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실제 사안의 정도와 선도의 가능성, 화해정도를 보면 청구인에게 1호 서면사과와 2호 접촉금지 처분을 함으로 충분히 청구인의 교육과 선도의 목적에 이를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과하면 안된다라고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사안 인지 직후 신고자와 신변보호를 위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성급하게 대질시키지 않도록 한 것 뿐이다.
- 나. 피청구인은 선배학생의 폭행과 보복이 두려운 것은 이해하나, 후배학생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한 해결방법이 아니고, 후배학생입장에서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바지를 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하여 강압적으로 느껴 겁을 먹었던 만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 다.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총 6점에 해당하는 조치인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처분 근거 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 2. 인정되는 기초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증거자료,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가. 청구인은 ○○○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일주일안에 갚는다고 하면서

만원만 빌려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가 돈이 없다고 대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엠창’ 이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나. 청구인은 ○○○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디퀘 반바지 10장을 사라고 하였고, ○○○에게 “닥치고 사” “ㅁ ㄹ 팔아” 라고 말을 하였다.

###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의 위법에 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실설명과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위압감을 주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에게 사과를 하려고 하였으나, 학교폭력전담교사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여 사과하지 못하였던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그 절차상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학교폭력전담교사는 청구인에게 사과를 하면 안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실설명과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지 않은 채 위압감을 주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청구인의 절차상의 위법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동법 제3조에 따르면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 (2) 청구인은 ○○○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였지만, 돈을 빌려달라는 문자내용의 취지와 그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에게 강요나 위협을 가한 것이 아닌 만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은 ○○○에게 “디케바지 사라”고 말을 하였고, ○○○도 “알아보고 있어요”라고 말을 하였으며, 청구인도 “알았어”라고 말을 한 것이 전부이고 그 과정에서 강압적이거나 문제가 된 태도나 행동을 보인 적이 없는 만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에게 보낸 금원을 빌려달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면 ○○○가 돈이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엠창’이라는 욕을 하면서 빌려달라고 한 점, 청구인이 디케바지 사라는 페이스북 메시지의 전체 어투(특히 ‘닥치고 사’)와 내용을 보면(청구인은 SNS에서 바지를 사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하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은 이 점을 인정하고 있음), 청구인의 행위들은 단순히 ○○○에게 돈을 빌려달라, 디케바지를 사라는 권유나 요청을 넘어서 ○○○에게 위협감을 준다고 보여지는 만큼,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재량권일탈, 남용여부)

-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청구인은 같은 학교 3학년 ○○○ 학생으로부터 돈을 모아달라는 강요를 당하여 위 ○○○ 학생의 폭행과 보복이 두려워 부득이하게 ○○○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던 것인 만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그 경위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3학년인 ○○○ 학생보다 더 많은 처분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실제 사안의 정도와 선도의 가능성, 화해정도를 보면 청구인에게 1호 서면사과와 2호 접촉금지 처분을 함으로 충분히 청구인의 교육과 선도의 목적에 이를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비록 ○○○로부터의 폭행과 보복이 두려워 부득이하게 ○○○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에 다른 방법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이로 인하여 ○○○가 심한 정신적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 청구인의 학교폭력에 대한 점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만한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적

정하다고 할 것이다.

#### 라. 소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 V.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